

2022-2024

제51대 (정기)

제1차 확대이사회



일 시 : 2022. 11. 25. (금) 19:00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참석 현황

○ 참석 인원

※ 총 38명 중 15명 참석, 7명 위임으로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확대이사회 성원 성립

운영위원회(10명)				
직책	성명	참석	불참	위임
회장	최 진 영	○		
부회장	정 우 현	○		
부회장	정 윤 경	○		
총무이사	김 호 영	○		
재무이사	원 성 두			○ (김호영)
홍보이사	박 혜 연	○		
대외이사1 (국내)	양 재 원	○		
대외이사2 (국외)	김 향 숙	○		
정보이사	김 제 중	○		
학외이사	윤 세 리	○		
당연직 이사(1명)				
직전회장	장 은 진	○		
분과학회장(16명)				
제1분과 임상심리학회	조 현 주	○		
제2분과 상담심리학회	이 동 귀		○	
제3분과 산업및조직심리학회	정 승 철		○	
제4분과 사회및성격심리학회	전 우 영			○ (최진영)
제5분과 발달심리학회	정 윤 경		(겸직)	
제6분과 인지및생물심리학회	정 상 철			○ (최진영)
제7분과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허 태 균		○	
제8분과 건강심리학회	배 성 만		○	
제9분과 여성심리학회	한 영 주		○	
제10분과 소비자·광고심리학회	성 용 준		○	
제11분과 학교심리학회	정 은 정		○	
제12분과 법심리학회	최 이 문		○	

제13분과 중독심리학회	조 성 민	○		
제14분과 코칭심리학회	이 은 경		○	
제15분과 심리측정평가학회	김 수 영			○ (서동기)
제16분과 디지털심리학회	신 민 섭		○	
상임위원장(13명)				
편집위원회	정 경 미			○ (정우현)
윤리위원회	홍 영 오		○	
학술위원회	정 우 현	(겸직)		
심리검사심의위원회	서 동 기	○		
학회발전기획위원회	민 병 배		○	
자격제도위원회	최 윤 경			○ (최진영)
공공정책위원회	이 수 정		○	
심리학회보편집위원회	곽 세 열		○	
재난심리위원회	최 현 정		○	
심리사법위원회	최 진 영	(겸직)		
학문후속세대교류위원회	안 우 영		○	
홍보위원회	박 혜 연	(겸직)		
국제교류위원회	김 향 숙	(겸직)		
임시위원장(3명)				
법률자문위원회	김 상 준			○ (최진영)
심리학R&D지원위원회	최 준 식	○		
자살예방위원회	고 선 규	○		
합 계		15	16	7

○ 배석 인원: 총 3명 중 3명 참석

사무국				
직책	성명	참석	불참	위임
팀장	신지용	○		
주임	이승희	○		
회장간사	곽현정	○		

차 례

제1차 확대이사회 보고

1. 제51대 사업 및 활동 보고	5
--------------------	---

제1차 확대이사회 부의안

제51-022호. 심리서비스법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 건	9
제51-023호. 편집규정 변경(안)	10
제51-024호. 임상심리학회 회칙 개정(안)	13
제51-025호.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칙 개정(안)	14
제51-026호. 입회규정 개정(안)	16
제51-027호. 입회 심의(안)	18

제1차 확대이사회 논의사항

논의1. 분과학회 자격규정 내 모학회 회원 요건	19
논의2. 분과학회 유치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21

1. 대내활동

1) 50대 51대 운영위원회 인수인계

- ① 일시/장소: 2022년 09월 03일(토) 17:00/ 메이탄 성수점
- ② 참석자: 50대, 51대 운영위원회
- ③ 내용: 이메일로 전달됨

2) 뇌과학 협회 관련 회의

- ① 장소: 온라인
- ② 참석자: 최진영 회장, 정우현 부회장, 최준식 위원장, 정상철 분과회장
- ③ 내용: 뇌과학 협회 관련 심리학 R&D
인지 및 생물 분과 학회와의 논의체 구성

3) 대학 혁신사업 관련 회의

- ① 장소: 온라인
- ② 참석자: 최진영 회장, 한미령 교수(안동과학대학 교양과)
- ③ 내용: 대학교 혁신사업 관련 심리학회 회원의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필요성 논의

4) 소방청심리지원준비위원회 1차 회의

- ① 2022년 10월 20일 저녁 8시 줌미팅
- ② 내용: 소방심리지원준비위원회의 역할 및 소방청과의 간담회 계획

5) 10.29 참사 관련 재난심리지원 대책 회의

- ① 일시: 22년 10월 29일
- ② 참석자: 최진영 회장, 최현정 재난심리위원장, 최윤경 전 재난심리위원장
- ③ 내용: 전화상담 연결 준비, 홍보 및 상담가 모집 준비

6) 사무국 직원(주임) 채용

- ① 일시/장소: 22년 11월 8일 15:00~16:00 / 사무국
- ② 참석자: 최진영 회장, 정우현 부회장, 정윤경 부회장, 김호영 총무이사

7) 분과 학술대회 / 축하 및 개최지원금, 축하화분 지원

- (1) 한국임상심리학회 학술대회: 2022년 10월 14일
- (2)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학술대회: 2022년 10월 22일
- (3)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2022년 10월 28일
- (4) 한국학교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2022년 11월 12일(토)
- (5)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학술대회: 2022년 11월 12일(토)
- (6) (예정)한국법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학술대회: 2022년 11월 26일(토)
- (7) (예정)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2년 12월 3일(토)
- (8) (예정)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2022년 12월 10일(토)

2. 대외활동

1) 뇌연구협회 회원학회 단체장 간담회 참석

- ① 일시/장소: 2022년 09월 05일(월) 14:00 / 온라인
- ② 내용: 뇌연구협회의 발전방향 및 세계뇌주간 행사 개최 주관에 대한 논의

2) 언론인 오찬

- ① 일시/장소: 2022년 09월 07일(수) 12:00~13:00 / 루브 광화문점
- ② 내용: 한국심리학회 홍보 자문

3) 포항 재난심리 지원

- ① 일시: 2022년 09월 07일(수)
- ② 내용: 보도자료 작성, 포항 시청 및 관공서 협조 공문 송부
포항 및 경북 심리전문가 협조 및 지원 요청
 - 한동대 신성만 교수, 최윤경 전임 재난심리위원장
 - 한동대 상담센터 장소 및 간이텐트 대여 협조

4) 국제심리연맹 회장단 회의

- ① 일시: 2022년 09월 09일(금) 21:00
- ② 참석자: 최진영 회장, 김향숙 대외국제이사, 최기홍 50대 대외이사,
German Gutierrez 회장, Ava Thompson 사무총장, Karl Swain 사무장
- ③ 내용: 심리사법 관련 협조 요청

5) 국회 자살예방포럼 유공자 추천

- ① 내용 :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유공자로 고선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장 추천

6) 심리학회 회장단 회의 일정 논의

- ① 참석자 : 최진영 회장, 정신건강정책국장
- ② 내용 : 국정 감사 이후로 심리학회 회장단과 회의 일정 합의

7) 회장 기고문 보도

- ① 내용 : 중앙일보에 회장 기고문 투고 합의 (2000자)
- ② 기고문 주제 : '대한민국 노인 자살율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

8) 정신건강의 날 행사 참석

- ① 일시: 10월 14일 오후 2시
- ② 심리학회 회원 & 임상심리전문가 한 분이 유공자로 대통령상 수상.

9) 국회자살예방포럼 5차 정책 세미나 참석 및 토론

- ① 일시/장소: 22년 10월 25일 / 국회 의원회관

10) 보건사회연구원 4차 협의체

- ① 일시/장소: 22년 11월 3일 / 온라인
- ② 내용: 상담 토론회에 대한 사과 요청

11) Pearson 미팅

- ① 일시: 22년 11월 8일 16:00 ~ 18:00
- ② 참석자: 최진영 회장, 김향숙 대외이사
- ③ 내용: 아태지역의 웹사이트 마련할 계획, 검사개발 및 교육에 대한 논의, 검사 관리 현황 확인 및 논의

12) 행복나눔재단 2022 SIT 컨퍼런스

- ① 일시: 22년 11월 10일 16:00-18:00 / 행복나눔재단
- ② 추후 학회 차원에서 고립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사업 추진할 예정

13) 심리사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소집

- ① 일시: 22년 11월 11일 17:00 / 온라인

3. 기타사항

1) 분과학회 세계학술대회 학술지원금 지급의 건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 후원 결정

- 10th World Congres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 일시: 2023년 6월 1~4일
- 장소: 서울 코엑스
- 주제: Global CBT Dissemination, Accessibility and New Technology
- 후원 금액: 5,000,000원
- 참고: <https://www.wccbt2023.org/>

2) 제68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후보 추천 요청

- 시 상 일 : 2023년 9월 18일(월)
- 시상대상 :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 포함)으로서, 특정 주제에 관련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업적을 독창성과 공헌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학술과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제외
- 시상인원 : 8명 이내 (부문별 2명 이내)
- 선정방법 : 학술원상시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선정
- 시상내용 : 상장, 메달 및 상금 1억원
- 제출기간 : 2022. 11. 1. ~ 2022. 12. 31

*최근 피추천자

2021년: 미추천/ 2018~2020년: 권정혜(임상)/ 2017년: 한덕웅

-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심리학자: 1999년 조금호(서강대 명예교수)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접수 진행 방법

1. 확대이사회, 분과학회, 학회발전기획위원회 후보 추천 요청
2. 학회발전기획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득표 순대로 두 명의 후보 선정 (접수 인원이 2명일 경우 바로 2차 심사 진행, 단독 후보의 경우 찬반투표)

3. 학회발전기획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여 최종 후보 선정 ※ 2/3 이상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한 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함
4. 확대이사회 안건 상정 후 승인여부에 따라 최종 접수
 -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결정 및 관행에 따름

3) 과총 평의회 이사후보 추천 요청

[과총 평의회]

1. 일 시 : 2022. 12. 21(수) 10:30
2.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B1)
3. 이사 추천 기한 : 12. 2까지

의결안건1

제51-022호. 심리서비스법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 건

※ 출석 인원 22명(위임7포함) / 찬성 15, 기권 7(위임)로 가결

1. 주 문	심리사법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2. 제 안 사 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제안자: 심리사법위원장 최진영] 개정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과 현 심리서비스 제도화 진행 단계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변경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현행</th><th>개정(안)</th></tr> <tr> <td colspan="2">○ 제8장 3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td></tr> <tr> <td> 10. 심리서비스법위원회 (1) (구성) 위원은 위원장이 30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전담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 심리서비스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심리서비스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나. 심리서비스의 법제화를 위한 준비로 심리사 자격의 개발 (민간자격 등록), 국가자격공인 및 유지, 자격증 시험 관리 및 자격증 수여,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률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td><td> 10. 심리사법 위원회 (1) (구성) -좌동- (2) (기능) 개정 심리사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나. 심리사의 국가전문자격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교육, 권리 보호 및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률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td></tr> </table>	현행	개정(안)	○ 제8장 3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0. 심리서비스법위원회 (1) (구성) 위원은 위원장이 30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전담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 심리서비스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심리서비스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나. 심리서비스의 법제화를 위한 준비로 심리사 자격의 개발 (민간자격 등록), 국가자격공인 및 유지, 자격증 시험 관리 및 자격증 수여,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률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심리사법 위원회 (1) (구성) -좌동- (2) (기능) 개정 심리사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나. 심리사의 국가전문자격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교육, 권리 보호 및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률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	개정(안)						
○ 제8장 3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0. 심리서비스법위원회 (1) (구성) 위원은 위원장이 30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전담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학내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운영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 심리서비스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심리서비스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나. 심리서비스의 법제화를 위한 준비로 심리사 자격의 개발 (민간자격 등록), 국가자격공인 및 유지, 자격증 시험 관리 및 자격증 수여,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률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심리사법 위원회 (1) (구성) -좌동- (2) (기능) 개정 심리사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전문자격 심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관장한다. 나. 심리사의 국가전문자격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교육, 권리 보호 및 심리사협회 구성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법률제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의 결 사 항	주문과 같음						
5. 참 고 사 항	1) 제안근거: 운영규정 제13조 2) 절차: 운영위원회 상정 ➡ 확대이사회 인준의결 ➡ 결과 즉시 발표 및 실시						
6. 첨부자료							

※ 출석 인원 22명(위임7포함) / 찬성 15, 기권 7(위임)로 가결

1. 주 문	편집규정 변경(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한다. * 상정된 변경을 아래 논의내용에 따라 수정함				
2. 제 안 사 유	학술지가 OA로 전환됨에 따라 편집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제출자: 편집위원장 정경미]				
3. 주 요 내 용	개정사유 - 윤리적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1항) 및 추가(2항~5항) - 게재가 논문의 게재시기 명시(5항) - 논문투고시스템 변경에 따라 원고 형식 변경(8항) - OA 전환에 따른 CCL 안내(9항) 편집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현행</th><th>개정안 (5항 추가)</th></tr> <tr> <td>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의 투고일 기준으로 이수 날짜가 최근 3년 이내이며,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 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된다. </td><td>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 받은 것만 인정),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로 간주된다. (삭제) 3.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국가 및 민간 연구 및 과제 영역 보고서, 책자, 잡지 등에 기 발표된 내용을 2차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td></tr> </table>	현행	개정안 (5항 추가)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의 투고일 기준으로 이수 날짜가 최근 3년 이내이며,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 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된다.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 받은 것만 인정),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로 간주된다. (삭제) 3.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국가 및 민간 연구 및 과제 영역 보고서, 책자, 잡지 등에 기 발표된 내용을 2차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현행	개정안 (5항 추가)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의 투고일 기준으로 이수 날짜가 최근 3년 이내이며,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 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된다.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원하는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한국심리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방식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연구 윤리 교육의 이수증(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명이 투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한국 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 받은 것만 인정),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문헌유사도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제출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로 간주된다. (삭제) 3.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국가 및 민간 연구 및 과제 영역 보고서, 책자, 잡지 등에 기 발표된 내용을 2차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2.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야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은 한국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각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논문에 대해 표절이나 이중출판 등의 윤리적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저자에게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5-20쪽을 권장한다	편집위원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받고 투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절 및 자기표절로 간주된다. 4.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학술대회의 종류에 따라 논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저자가 투고 전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5.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6.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야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7. 투고논문은 한국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각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논문에 대해 표절이나 이중출판 등의 윤리적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저자에게 문헌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원고는 워드(권장)나 아래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5-20쪽을 권장한다. 9. 한국심리학회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출판 정책 도입에 따라 "CC-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를 선택한다. 이는 사용자는 저작자를 밝
--	--	--

	하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023년 ACOMS로 투고시스템 전환부터는 워드파일만 받음 ※ 1호의 경우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이 모호함. 내부적으로 인정기준을 규정하여 명시화 필요. ※ 2호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로 간주된다’ 는 윤리규정에서 다를 내용으로 편집규정으로는 앞의 문구로 충분하므로 삭제. ※ 5호의 경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필수가 아닌 원칙으로 제시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필요.
4. 의 결 사 항	주문과 같음
5. 참 고 사 항	1) 제안근거: 운영규정 제13조 2) 절차: 운영위원회 상정 ➡ 확대이사회 인준의결 ➡ 결과 즉시 발표 및 실시
6. 첨 부 자 료	

의결안건3

제51-024호. 임상심리학회 회칙 개정(안)

※ 출석 인원 22명(위임7포함) / 찬성 14, 기권 8 (위임 포함)로 의결 유보

1. 주 문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제 안 사 유	업무 연속성을 위한 학회장 및 대외부회장 임기 연장 [제안자: 제58대 한국임상심리학회장 정경미]				
3. 주 요 내 용	개정사유 -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참여해야 할 대외활동이 폭증하고 있음. 학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회장 및 대외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칙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th>개정(안)</th></tr> </thead> <tbody> <tr> <td> 회칙 제12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하락) </td><td> 회칙 제12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차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2년으로 한다. <수정>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일부 이사의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수정> (하락) </td></tr> </tbody> </table> ※ 참고: 회칙 개정 후 임원 임기 - 2년: 회장, 대외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1편집이사, 제2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 - 1년: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인권 및 회원권익이사, 특임이사 ※ 회칙 개정안 적용은 차차기(제61대, 2024년)부터 적용 예정 ※ 회장과 임원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우려됨. - 1년 임기의 임원은 2년 임기가 가능하더라도 1년만 하게 될 수 있어 1년/2년에 대한 명시하는 것이 염려됨. - 회장(2년)과 수석부회장(1년)의 임기 차이에 대한 염려.	현행	개정(안)	회칙 제12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하락)	회칙 제12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차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2년으로 한다. <수정>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일부 이사의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수정> (하락)
현행	개정(안)				
회칙 제12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다음 총회 때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임기가 2년인 이사의 경우 보장된 임기를 유지한다). (하락)	회칙 제12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 시점부터 차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2년으로 한다. <수정>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단, 일부 이사의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수정> (하락)				
4. 의 결 사 항	주문과 같음				
5. 참 고 사 항	1) 제안근거: 운영규정 제13조 2) 절차: 분과학회 상정 → 한국심리학회 운영위원회 상정 → 확대이사회 인준의결 → 결과 즉시 발표 및 실시				
6. 첨 부 자 료					

※ 출석 인원 22명(위임7포함) / 찬성 15, 기권 7(위임)로 가결

1. 주 문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제 안 사 유	차기 회장 선출 규정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3. 주 요 내 용	[제출자: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조성민] 개정 개요 - 회칙 제9조 제2항 수정: 부회장 인원 명시 - 회칙 제10조 제4항 수정: 선출시기, 절차 구체화 - 회칙 제11조 제2항 수정: 회장 유고, 임원 결원 시 규정정보완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칙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현행</th><th>개정안</th></tr> <tr> <td>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td><td>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td></tr> <tr> <td>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td><td>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선출할 수 있다.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은 이를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접수된 사항을 총회 안건으로 올릴 것을 의결하여야 한다. </td></tr> </table>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선출할 수 있다.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은 이를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접수된 사항을 총회 안건으로 올릴 것을 의결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최소 12인: 당연직이사 최소 8인(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4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 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2) 회장, 선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선출할 수 있다.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등록하고, 사무국은 이를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접수된 사항을 총회 안건으로 올릴 것을 의결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th>개정안</th></tr> </thead> <tbody> <tr> <td>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td><td>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직무대행한다.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td></tr> </tbody> </table> ※ 11조 2항에서 부회장이 유고 시 총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지,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부회장도 유고 시 총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음. ※ 개정 의도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의 순차적인 순서를 명시하기 위함이었음.	현행	개정안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직무대행한다.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부회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직무대행한다.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의 결 사 항	주문과 같음				
5. 참 고 사 항	1) 제안근거: 운영규정 제 13조 2) 절차: 분과학회 상정 ➡ 운영위원회 상정 ➡ 확대이사회 인준의결 ➡ 결과 즉시 발표 및 실시				
6. 첨 부 자 료					

의결안건5

제51-026호. 입회규정 개정안

※ 출석 인원 22명(위임7포함) / 찬성 15, 기권 7(위임)로 가결

* 입회규정 혹은 자격증 규정에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분과학회에서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입회규정이 변경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 문	입회 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2. 제 안 사 유	정회원 입회 자격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개정 제안 [제출자: 총무이사 김호영]									
3. 주 요 내 용	개정사유 - 정회원 입회자격 3호의 경우로 분과학회 자격증 취득 관련 입회 신청자가 많음. - 3호의 규정은 내용상 특별회원 규정에 적합하고, 광범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여 입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심리학회입회기준(운영규정제2장2조. 회원의 자격) 신규대비표 <table><tr><th>회원등급</th><th>현행</th><th>개정안</th></tr><tr><td>1. 정회원</td><td>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각 분과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분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학회장이 추천한 사람</td><td>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각 분과학회의 최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심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td></tr><tr><td>2.특별회원</td><td>심리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td><td>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회장이나 각 분과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td></tr></table> ※ 개정안 정회원 3호의 ‘최상위 자격증’ = 1급 전문가 자격증만을 의미(2급은 포함되지 않음)	회원등급	현행	개정안	1. 정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 전공 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각 분과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분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전공 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각 분과학회의 최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심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	2.특별회원	심리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회장이나 각 분과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회원등급	현행	개정안								
1. 정회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및 심리학 관련 전공 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각 분과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분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학회장이 추천한 사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심리학 전공 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5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각 분과학회의 최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심리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								
2.특별회원	심리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회장이나 각 분과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논의 세부 내용 의견 1.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 피선거권 등 학회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보유하므로, 학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정회원 유입에 대한 깊은 고려 필요. 의견 2. 해당 이슈에 대해 모학회 측에서 추가적으로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의견 3. 학회는 기존 심리학회 회원의 뜻과 학회 정체성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함. 의견 4. 기존 정회원 기준 3호로 분과학회장의 추천으로 입회신청하는 경우, 다른 입회자들과 달리 모학회의 기본 정회원 기준(1, 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별도의 심사 과정없이 정회원으로 입회함. 또한 심사 과정을 거치려면 입회신청자의 상당수가 심리학 비전공자여서 교육과정과 심리학 이수과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국의 업무가 폭증함. 의견 5. 현 정회원 입회기준 3호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을 자격 취득 혹은 수련등록의 조건으로 두고 있는 분과학회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u>분과학회 자격규정을 모학회 입회기준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논의안건 1 참고)</u>. 예시> 자격증 취득 혹은 수련등록 요건을 ‘한국심리학회 준회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 의견 6. 자격증 취득 외에 모학회 혹은 분과학회 차원에서 기본적인 심리학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음. 이후 심리사범에 대해서 심리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격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백업 장치를 두고 있다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4. 의 결 사 항	주문과 같음
5. 참 고 사 항	1) 제안근거: 운영규정 제13조 2) 절 차: 운영위원회 상정 ➡ 확대이사회 인준의결 ➡ 결과 즉시 발표 및 실시 3) [논의안건1]
6. 첨 부 자 료	

의결안건6

제51-027호. 입회 심의(안)

※ 출석 인원 22명(위임7포함) / 찬성 15, 기권 7(위임)로 가결

1. 주 문	별첨 1과 같이 회원 가입을 인준한다.	
2. 제 안 사 유	정회원 및 준회원 신규 회원 인준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기 위함	
3. 주 요 내 용	[제출자: 총무이사 김호영]	
	1) 준,정회원 입회	
	① 규정에 의거, 입회 심사 진행 및 각종 문의 응대	
	- 기간: 2022년 6월 30일 ~ 2022년 11월 3일	
	② 입회 심의 명단	
	- [별첨1] 참조	
	- 2022년 6월 30일 ~ 2022년 11월 3일 학회 가입 현황	
	2) 입회 심의 현황	
	심리학전공자	
	정회원	준회원
	365명	178명
	심리학 전공인정자	
	정회원	
	9명	
4. 의 결 사 항	주문과 같음	
5. 참 고 사 항	1) 제안근거: 운영규정 제4조 및 제24조	
	2) 절차: 운영위원회 심의 ➡ 확대이사회 상정 ➡ 의결	
6. 첨 부 자 료	1) 모학회 회원 가입 현황	

[제출자: 총무이사 김호영]

<논의 배경>

- 일부 분과학회의 자격관련 규정에서 모학회 정회원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회 신청자가 다수임.
- 한국심리학회의 입회기준에는 입회 자격으로 심리학 전공 **대학원 졸업자(정회원)**, 대학원 재학 혹은 **대학졸업자(준회원)**를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회원 입회 신청자 중 상당수가 한국심리학회의 정회원 기준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등록을 원하는 대학원 **재학생**(입회신청시점)
대학원 **재학** 중 혹은 학부 졸업 후 상담심리사 2급 취득한 자
상담학 전공 등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심리사 1급 취득한 자

- 기존의 대응: 운영규정 2장 2조 적용하여 '3) 각 분과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분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학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회 진행 * 대안 2)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해당자의 경우)으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e.g.각 분과학회의 회장,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모학회의 입회기준을 고려한 자격규정의 조정이 필요함

분과학회 자격예시	자격관련 규정 내 모학회 회원 요건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2장 제3조 -임상심리전공의 석사 혹은 박사학위 취득자 -임상심리전공기준: 대학원 임상심리학과 관련 3과목 이상, 연구 방법론과 관련 1과목이상 이수한 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2 조 (수련생)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은 다음의 각 요건에 모두 합당해야 한다. 1. 본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지도교수가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 상담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 (상담관련 4 과목, 기초및 방법론 1 과목 이상) - 자격심사합격 후,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2급 자격취득

- 상담관련 석사 재학 혹은 학사학위 취득 (상담관련 3과목, 기초 및 방법 3과목 이상)
- 자격심사합격 후,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제출자: 회장 최진영]

<논의 배경>

- 51대 한국심리학회의 주요 사업계획에는 회원들의 '학술 교류 및 연구 역량 향상 지원'이 포함되었음.
- 이에 각 분과학회의 국제적 학술교류를 지원하고자,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분과학회에서 유치하는 국제학술대회의 후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분과학회 유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 1) 국제행사 유치 시 최소 3개국 이상 포함
- 2) 학술 행사일 것
- 3) 발표자의 1/3 이상이 해외 연자일 경우
- 4) 학술행사의 규모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후원금액을 결정